

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 261호

『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23호)』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25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의 확인기준을 개선하여 하청생산의 방지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9조

#### 3. 주요내용

- 품목별 세부기준에서 임차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품목의 설비 임차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적용으로 생산설비 임차가능 제품 확대
  - 섬유로프, 토양개량제, 아스팔트콘크리트, 생선묵튀김(일부) 등
-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통하여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을 개발 업체의 경우 협업체가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생산확인 발급
- 법부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구내작업장에 대해서도 공장등록 인정
- 소기업,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장애가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

## 규정 개선

- 시설, 면적, 공정 등 기준 완화 : 모터펌프 등 22개 제품
- 현실에 맞지않는 기준조정 및 문구 명확화 : 수문 등 20개 제품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『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\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(☎ 042-481-8918)

\* e-mail : [sangk99@smba.go.kr](mailto:sangk99@smba.go.kr)

4. 기타사항 :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공청회, 간담회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